



PwC 베트남 뉴스레터

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규 규정 안내

2026년 2월





핵심 요약

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(당사 이전 [뉴스레터](#) 참조), 최근 정부는 제356/2025/ND-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. 본 시행령은 **2026년 1월 1일부로 즉시 시행**됩니다.

본 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세부 지침 및 이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, 기존의 제13/2023/ND-CP호를 **대체**합니다.

상세 내용



시행령 35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(PDL)에 규정된 기업의 핵심 준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:

-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 획득
-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부합하는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수입 및 정보주체의 권리 요청 대응 체계 마련
-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 지정 및 책임자 선임
-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및 국외 이전 영향평가(해당 시) 작성 및 제출

또한, 시행령 356호는 이전 규정에 비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. 주의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:

01

정보주체 권리 행사 대응 기한 명문화

정보주체의 요청을 처리하는 기한이 이전 시행령 제13호에서 규정했던 '72시간 이내'에 비해 **최대 30일**로 조정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해당 처리 기한은 요청의 성격이나 복잡성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02

동의 획득 방식 및 옵트인 (Opt-in) 보호 조치

정보주체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동의 방식은 '**옵트인(Opt-in)**'이 기본값(Default)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되며, 제공되는 안내 문구는 정보주체가 동의와 비동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해야 합니다.

상세 내용



03

개인정보 이전 관련 요구사항

-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,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**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**이 체결되어야 합니다. 특히 데이터 이전에 대한 **대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**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.
- 기업내 내부 부서 간 개인정보 공유할 경우, 공유 및 사용 범위를 **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**해야 하며,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**보안 조치를 이행**해야 합니다.

04

개인정보 보호 책임자(DPO)의 공식 자격 요건

시행령 356호는 개인정보 보호(DPO)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주요 요건으로는 **관련 분야 (법률, IT, 사이버 보안 또는 인사관리 등)에서의 2년 이상 경력**이 필요하며, **전문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교육**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
상세 내용



05

개인정보 영향평가 (DPIA) 및 국외 이전 영향평가 (CTIA)

- 시행령 356호는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(DPIA)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 영향평가 (CTIA) 보고서를 위한 새로운 표준 서식을 공포하였습니다.
- 보고서 제출 시, 공안부(MPS)는 15일 이내에 해당 DPIA/CTIA를 검토하여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. 이는 이전 시행령 제13호와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된 메커니즘입니다.
- 또한, 새로운 이전 또는 처리 목적이 생기거나 관련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DPIA와 CTIA는 **6개월마다** 갱신되어야 합니다. 기업이 조직 개편, 종료, 해산,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자 변경 또는 개인정보 처리 사업 라인 변경을 겪는 경우, 업데이트는 **10일 이내**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
06

공안부의 집행 및 감독 강화

공안부는 향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:

- (i) 개인정보 보호 준수 현황
- (ii)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(DPIA) 및 국외 이전 영향평가 (CTIA)
- (iii)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업체의 적정성

Contact us

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또는 회계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당사의 공식적인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, 언제든지 당사 전문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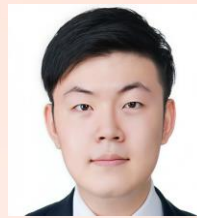
Phan Thi Thuy Duong
Partner
phan.thi.thuy.duong@pwc.com



우정균 – 호치민 사무실
Director, Korean CPA
+84 (28) 3823 0796 Ext. 4611
jungkyun.woo@pwc.com



Tran Thi Than Niem
Senior Manager
tran.thi.than.niem@pwc.com



위규영 – 하노이 사무실
Manager
+84 (24) 3946 2246 Ext. 1011
wee.kyue.young@pwc.com



www.pwc.com/vn